

대한민국정부



제19656호 2019. 12. 26.(목)

【조 약】

○조약제2442호(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5

【총 리 령】

○총리령제1582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7

【부 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4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집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9
-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3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9
- 고용노동부령제27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40
- 고용노동부령제273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375
- 고용노동부령제274호(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388
- 여성가족부령제147호(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89
- 국토교통부령제67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94
- 국토교통부령제678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95

【고 시】

- 국방부고시제2019-30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400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214호(국가산업단지<울산·미포 등 3개>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406
- 보건복지부고시제2019-276호(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 407
- 환경부고시제2019-241호(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 417
- 환경부고시제2019-246호(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417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67호(사업인정) 418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68호(사업인정) 419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21호(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 419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23호(도로 노선 지정 및 변경[일반국도 제32호선<음양~성연>]) 421
-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24호(도로 노선 지정 및 변경[일반국도 제39,45호선<염성~용두>]) 422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044)205-1492, 205-1493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가 응시자격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확인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시험 편의를 높이고,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및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자격검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은 3.5센티미터×4.5센티미터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6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을 “직행좌석형”으로, “수도권 내에 위치한 노선”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에 위치한 노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운송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까지의 정류소에 추가로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2호마목1) 중 “40퍼센트”를 “40퍼센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2) 중 “30퍼센트”를 “30퍼센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40퍼센트)”로 하며, 같은 목 3) 중 “20퍼센트”를 “20퍼센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로서 11시부터 17시 사이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감소

제19656호

관 보

2019. 12. 26.(목요일)

제44조제3항 중 “법 제21조제12항”을 “법 제21조제13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비교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전기자동차 대수에 1, 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별표 4의3 제2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시행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의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운송 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된 경우 기점 지역에 정류장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송수요에 따라 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람 중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3년이 경과하더라도 다시 신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67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5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